

지식재산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분쟁 :

## WIPO센터를 통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박은아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 Legal Staff,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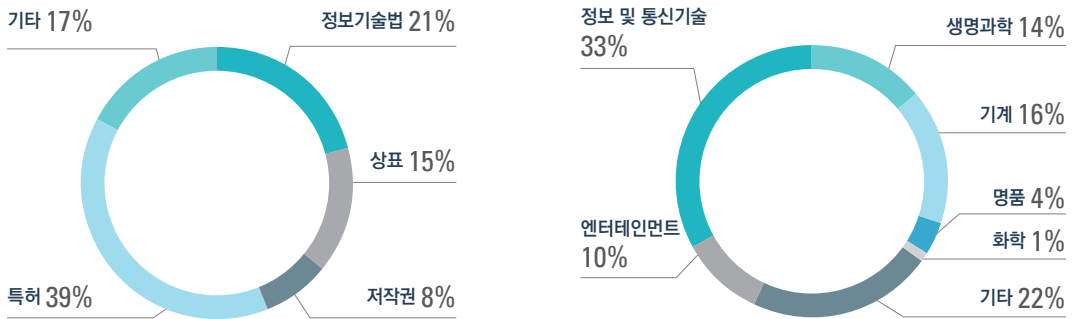
### I. WIPO 중재조정센터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

지난 수년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된 국제거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연관된 국제분쟁 역시 함께 증가해왔다. IP 분쟁을 해당국가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법정소송이 IP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기에 늘 적합한 것은 아니다. 특히 IP 권리의 효력범위가 속지주의에 따르는 것을 고려하면, 각각의 국가에서 다른 법을 적용하게 되는 국제 소송은 시간, 비용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관할 국가마다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소송 이외의 대체적인 방식의 분쟁해결을 일컫는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이런 면에서 국적이 다른 당사자들의 IP 및 기술 관련된 계약상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특별히 효율적이다. 유엔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94년 ADR이 IP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이라는 믿음으로 중재조정센터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WIPO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WIPO센터는 분쟁해결 및 IP분야 국제적인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중재, 조정, 신속중재, 전문가결정을 위한 규칙을 수립했다. IP 지향의 규칙 덕분에 WIPO센터는 IP, 기술,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국제적이고 중립적이며 IP 특화된 분쟁해결서비스 제공자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WIPO센터는 370건 이상의 조정, 중재, 전문가결정 사건을 다루었으며, 조정이

42%, 신속중재 및 중재가 40%, 전문가 결정이 18%를 각각 차지하였다. 사건의 범위는 특허 침해, 특허 라이선스, 특허풀 (patent pool),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IT 거래, 제약품 및 소비자 제품 배급계약, 저작권, 연구개발(R&D)계약, 상표병존계약, 미디어 관련 계약, 조인트벤처계약 그리고 기존의 복수국가의 법원에서 진행중이던 IP 법정소송의 합의 관련 계약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WIPO ADR 규칙이 IP 분쟁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WIPO센터는 그동안 예술 마케팅, 건설, 고용,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상업적 분쟁을 다루어오기도 하였다. 아래 차트는 WIPO센터가 다루었던 사건분야를 보여준다.



또한, WIPO센터가 다루었던 조정 사건의 69% 그리고 중재 사건의 40%가 화해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높은 화해율은 IP 거래가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의 상업화 협력과 같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중요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연관이 깊다. 특히 중재의 경우, 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판정부는 중재를 종결하고, 당사자의 요청하에 “중재화해판정” (consent award)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이는 뉴욕협약 (New York Convention)에 의거해 전세계적으로 집행가능할 수 있게 된다.

WIPO센터는 또한 선정된 조정인, 중재인, 전문가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장한다. 국제적 네트워크 덕분에 WIPO센터는 현재 70여개국으로부터 1,500명 이상의 독립적인 WIPO 중립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ADR 분야 뿐만 아니라 IP를 비롯한 기술, 생명과학,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지역적 다양성은 IP 분쟁의 국제적인 특성 및 각각의 적용 실체법을 고려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WIPO에 등록되지 않은 중립인도 선정할 수 있다.

WIPO 사건당사자들은 WIPO센터가 제공하는 전자사건관리시스템인 WIPO ECAF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당사자 및 중립인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건 관련된 자료를 안전하게 접수, 저장, 검색, 열람 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건 관리가 가능하다.

중립인 수당은 WIPO 신속중재 사건을 제외하고는 중립인 및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WIPO센터에 의해 정해진다. WIPO센터는 UN 산하의 비영리기구로서, 매우 경쟁적인 수수료를 제공하며, WIPO ADR 절차에 요구되는 비용이 분쟁의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도록 관장하고 있다. 현재 WIPO센터는 사건의 당사자 중 하나가 PCT, 헤이그,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자이거나, WIPO Green Technology의 제공자나 요청자인 경우, 등록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 II.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설문조사의 시사점

2013년 WIPO센터는 기술관련 거래 분쟁해결시 법정소송과 ADR 방식 이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실시한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설문조사”를 발표했다. 62개 국가에서 393명의 응답자가 참석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분쟁해결에 관한 많은 중요점을 시사하였다.

먼저 계약 협상단계에서 분쟁해결조항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분쟁해결 전략 역시 외국법정소송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건별로 다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은 거래의 국제적인 면과 연관된 IP 권리를 고려한 내부 분쟁해결 규정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은 보통 특정 분쟁해결 방식, 분쟁해결포럼, 해당 실제법 및 가능한 적용범위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법정소송 혹은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분쟁해결조항 협상시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밝혔다.

이에 관해 응답자들은 escalation 조항<sup>1)</sup>이 초기 협상 및 조정을 통해 높은 화해율로 이끈다는 점에서 시간 및 비용 절약상 큰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비공식적이며 비즈니스 지향적인 협상이나 조정 과정이 적대적인 법정소송이나 중재절차에 비해 보다 성공적인 화해로 이르게 한다는 점과 연관있다.

본 설문조사는 또한 각각의 국가 법정에서 개별적인 사법절차에 의존하기 보다, 모든 관할구역에 적용가능한 단일 분쟁해결 방식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함을 확인해 주었다.

### III. 새로운 WIPO 규칙 (2014년 6월 1일 시행)

2013년 WIPO센터는 WIPO 중립인을 포함해 아시아, 유럽, 미국 등 각지에서 선정된 IP 중재 및 조정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규칙을 재검토 하였다. 1994년 수립되어 2002년에 업데이트된 현재 규칙은 복합적인 절차상황에서도 WIPO센터의 꾸준히 증가하는 조정 및 중재 사건을 관리하는데 확고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수정은 큰 변동없이 2010년 UNCITRAL 중재규칙 수정 및 중재법상의 몇몇 외적 진전 등을 수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14 규칙은 기존 WIPO센터의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수년간의 WIPO센터의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령, 긴급구제(emergency relief)와 복수당사자 중재와 같은 조항들은 WIPO 규칙이 기술, 비즈니스 및 법적 조건의 진화에 부응하도록 한다. 특히, 긴급구제 조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긴급구제 절차를 가능케하며, 새로운 조항은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병합을 다룰 뿐만 아니라, 또한 절차의 진행정도를 포함한 해당 상황들을 고려하여, WIPO센터가, 특정 조건하에, 새로운 중재 및 신속중재를 기존 사건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1) Escalation 조항: 다단계(multi-step) 분쟁해결조항이라고도하며, 가령, "조정, 단 조정에 의해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재"와 같이 분쟁해결을 위한 여러 단계를 설정해놓는 조항을 일컫는다. WIPO센터의 escalation 조항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http://www.wipo.int/amc/ko/clauses/>

## IV. 특정 분야에서의 WIPO ADR 서비스

###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WIPO센터는 상표 소유자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으로 알려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의 남용에 대해 제기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주도적 기관이다. WIPO 주도로 수립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은 온라인분쟁해결 방식으로, 대체로 두 달안에 집행가능한 결정이 내려진다. 1999년 이후, WIPO센터는 최상위도메인(gTLD 및 ccTLD) 부분에서 총 52,500개 이상의 도메인이름, 28,0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었다. 또한, WIPO센터는 신규최상위도메인(new gTLD)에 상응하는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권리이의제기(Legal Rights Objection) 절차를 권장하였으며, 2013년 9월에 총 69 건의 전문가 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신규최상위도메인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6건의 UDRP 사건을 접수하였다.

### FRAND 분쟁해결

표준설정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들은 대체로 소속 회원들이 필수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비공개적이며 융통성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ADR 절차는 시간, 비용적 효율성을 비롯해, FRAND 조건 결정에 적절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WIPO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텔레콤 업계 기업들이 FRAND 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을 WIPO 조정 및 (신속)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사후합의계약서<sup>2)</sup>를 고안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각국 IP 오피스와의 협력

국가 IP 오피스의 분쟁해결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WIPO센터는 합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특별고안된 ADR 체계 수립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Brazilian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은 당사자 중 하나 혹은

2) <http://www.wipo.int/amc/en/center/specific-sectors/ict/frand/> 참조

양당사자가 브라질 밖에 거주하는 경우 WIPO센터를 접수된 조정사건의 관장자로 지정하였다. 싱가포르 IP 오피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역시 상표 분쟁 관련 조정 사건과 특허 분쟁 관련 전문가 결정사건을 WIPO센터의 싱가포르 오피스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WIPO센터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저작권 관련된 분쟁에서 ADR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WIPO센터는 영화 및 미디어, 프랜차이징, 생명과학, R&D 및 기술 이전 분야에서 특별고안된 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V. 결론

WIPO센터 접수사건,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대한 국제설문조사, 그리고 WIPO 조정 및 중재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피드백들은 모두 IP관련 국제분쟁에서 조정 및 중재절차 사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WIPO 조정 및 중재 이용 당사자들 다수가 과거 복수관할권에서 진행되는 IP 법정 소송에 관여했었으며, 이들은 앞으로의 분쟁에 대해서는 ADR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IP 거래가 급증하고, 당사자 및 변호인들이 좀더 융통성있고 기밀유지가 가능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선호한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UN기구로서의 높은 국제적 중립성을 갖춘 WIPO센터는 IP 분야에 정통한 전문 중립인을 보유하고, 경쟁적인 수수료 및 비용으로 IP 분야 분쟁 해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